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7920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장근석

피 고 1. B

2. C

3. D

변 론 종 결 2022. 12. 7.

판 결 선 고 2023. 1. 11.

주 문

1. 피고 B, C과 E 사이에 각 2019. 5. 17.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 C은 원고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C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B, C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7. 체결된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하고, 피고 B, C은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9. 6. 21. 접수 제717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다. 피고 D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F 주식회사는 원고와 ① 2015. 6. 25. 여신한도금액 60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이후 여신한도금액이 59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하 이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② 2017. 6. 16. 여신한도금액 894,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에 따른 대출을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은 위 각 여신거래약정 체결일에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제1 대출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66,000,000원 한도에서, ② 이 사건 제2 대출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98,340,000원 한도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이라 한다)

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하였고, E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을 따른 채무를 이행할 경우 F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E과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위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이라 한다).

라. E은 2019. 5. 17. 무렵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 B, C에게 각 50,000,000원씩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래 피고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 C에게 54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이하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 B, C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9. 6. 21. 접수 제7177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은 F 주식회사의 주식 47,891주(주당 액면가 5,000원) 외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 무렵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대출채무액은 총 1,462,125,314원(= 이 사건 제1 대출채무액 600,000,000원 + 이 사건 제2 대출채무액 862,125,314원)이었다.

사. F 주식회사가 2020. 8. 31.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위 일자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당시까지의 원리금 합계 1,365,078,6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아. E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실제 매수인은 E이고, 다만 E은 이에 따라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 C에게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한 것인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하여 있었던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에 따른 채무 164,340,000원(이 사건 각 대출액이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의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므로,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액 전액이 E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액이 된다) 및 그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였던 E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에 따른 구상금채무액 1,365,078,646원 합계 1,529,418,646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무자력상태에 있었던 E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B, C을 상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 C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무자력인 E을 대위하여 피고 D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인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이 E이고,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이 피고 B, C에게 각 50,000,000원씩을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370,000,000원은 피고 B,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충당되었는데, 이후 피고 B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2021. 6. 18. G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2021. 7. 14.부터 2021. 7. 15.까지 피고 B, C의 모(母)이자 E의 처(妻)인 H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피고 B, C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E이 관여하였다고 추단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관하여 E이 관여하였음이 입증된 부분은 위와 같이 피고 B, C에게 증여된 100,000,000원 부분에 불과하여 나머지 매매대금에 관하여 E이 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③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을 H의 자금으로 충당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민법의 부부별산제(민법 제830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은 H가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할 뿐 그 부(夫)인 E과 피고 B,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추단케 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이 E이고,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B,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채무자 E의 무자력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이 보유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결국 E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B,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이 보유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222,166,349원에 달하여 이를 고려하면 E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E 소유 F 주식회사의 주식의 가치 222,166,349원은 2018.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된 F 주식회사의 주식 1주의 가액 4,639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인 사실, ② 위 주식의 가액은 위 일자 기준 F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이 347,992,574원임을 전제로 하여 1주당 순자산가액의 80%라는 산식을 통하여 산출된 것인 사실, ③ 그런데 위 시점 이전인 2017. 12. 31.부터 F 주식회사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음수인 적자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위 2018. 12. 31.을 기준으로 해도 F 주식회사의 영업권 등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 ④ F 주식회사는 2019. 12. 31.에는 자본과 부채의 합계가 자산을 254,000,000원 초과하는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 주식회사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F 주식회사의 주식이 실제로 거래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2018. 12. 31.과 2019. 12. 31. 사이에 체결된 것인바, 위와 같이 F 주식회사가 2019. 12. 31.에는 자본잠식상태에 도달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도 F 주식회사가 2018. 12. 31.과 같은 347,992,574원 상당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F 주식회사의 순자산의 감소 추세에 비추어 위 시점에는 F 주식회사가 거의 자본잠식상태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이 보유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주식은 E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서 E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의 적극재산은 없는 것이 되고,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대출액이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의 한도액을 모두 초과하고 있었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E은 이 사건 제1 연대보증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164,34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E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제1 연대보증에 따른 E의 채무만으로도 E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제2 연대보증에 따른 E의 채무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성질상 E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은 E의 무자력 상태 등을 고려하면 E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 B, C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E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거나, 피고 B, C이 이에 대하여 선의였다는 피고 B, C의 항변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이 각 증여받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원

별지